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완화하여 자치경쟁력제고 및 주민불편을 해소토록 함에 따라
- 현행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제5조 규정 중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하는 규정은
-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해소와 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 적극적으로 행정운영을 공개함을 감안할 때, 현실성 없는 모호한 규정으로 삭제 운영코자 함.

2. 주요골자

- 제5조(주민의 공개제한)중 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삭제)

3. 검토의견

지방자치의 본격 실시에 따라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에서는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주민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우리 서구에서도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구의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상황에 관한 주민공개 대상 사항과 공개방법 및 주민공개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실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공개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적 법률유보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한 주민공개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 권리의 제한에는 비례의 원칙이나 이익형량의 원칙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조례 제5조 제4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과 같은 개념은 추상적이고 불확정적 개념일 뿐 아니라, 그에 관한 판단권은 집행부의 재량사항으로서 알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해소와 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 제5조 제4호를 삭제하자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